

외도 해담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안내]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담은아파트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시 입장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등으로 견본주택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청약 및 공급예약 등 주요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체온이37.5℃가 넘을 경우

*코로나 19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따라 견본주택방문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는 2021. 7. 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09월 17일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7)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2020. 09. 17. 이전)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 표에 함께 등재 되어야함 (예)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함께 등재 되어야 함 (예)아들.딸,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전혼 자녀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 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 품목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바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 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기타지역거주자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09. 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 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 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1.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2항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을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1년 09월 27일(월)	2021년 09월 28일(화)	2021년 10월 05일(화)	2021년 10월 07(목)~ 10월 08일(금)	2021년 10월 18(월)~ 10월 20일(수)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분양 사무실 접수 (10:00~17:30)	분양 사무실 접수 (10:00~17:30)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분양사무실 - 구비서류 치참 방문 * 서류심사 및 부적격 검수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분양사무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85-3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 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 58404호(2021.09.1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85-3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지상 12층 1개동, 총 65세대

■ 입주시기 : 2021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 대상 및 면적

(단위 : 면적-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라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1000561	1호	083.4815	83.4815	20.5756	104.0571	21.6358	125.6929	29.0882	10	10
				82.8628	20.8113	103.6741	21.5560	125.2301	28.8727	10	10
		2호	082.8628	84.3225	20.7985	105.1210	21.8568	126.9778	29.3812	1	1
				82.1272	22.1106	104.2378	21.6732	125.9110	28.6163	10	10
		3호	082.1272	82.1272	22.1098	104.2370	21.6738	125.9108	28.6163	1	1
				82.1272C	22.1106	104.2378	21.6732	125.9110	28.6163	10	10
		4호	082.1272C	82.1272	22.1098	104.2370	21.6738	125.9108	28.6163	1	1
				082.8628B	20.3797	103.2425	21.4662	124.7087	28.8727	11	11
		5호	082.8628B	82.8628	20.3797	103.2425	21.4662	124.7087	28.8727	11	11
				083.4815A	20.1424	103.6239	21.5456	125.1695	29.0882	10	10
		6호	083.4815A	83.4815	20.1413	103.6228	21.5464	125.1692	29.0882	1	1
				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라인	호수	층 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83.4815	1호	301	3	1	93,416,341	331,583,659	425,000,000	42,500,000	382,500,000		
		401	4	1	93,416,341	294,583,659	388,000,000	38,800,000	349,200,000		
		501	5	1	93,416,341	298,583,659	392,000,000	39,200,000	352,800,000		
		601	6	1	93,416,341	302,583,659	396,000,000	39,600,000	356,400,000		
		701	7	1	93,416,341	306,583,659	400,000,000	40,000,000	360,000,000		
		801	8	1	93,416,341	310,583,659	404,000,000	40,400,000	363,600,000		
		901	9	1	93,416,341	315,583,659	409,000,000	40,900,000	368,100,000		
		1001	10	1	93,416,341	320,583,659	414,000,000	41,400,000	372,600,000		
		1101	11	1	93,416,341	325,583,659	419,000,000	41,900,000	377,100,000		
		1201	12	1	93,416,341	325,583,659	419,000,000	41,900,000	377,100,000		
		82.8628	2호	202	2	1	94,357,306	323,642,694	418,000,000	41,800,000	376,200,000
				302	3	1	92,724,266	293,275,734	386,000,000	38,600,000	347,400,000
402	4			1	92,724,266	297,275,734	390,000,000	39,000,000	351,000,000		
502	5			1	92,724,266	301,275,734	394,000,000	39,400,000	354,600,000		
602	6			1	92,724,266	305,275,734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702	7			1	92,724,266	309,275,734	402,000,000	40,200,000	361,800,000		
802	8			1	92,724,266	313,275,734	406,000,000	40,600,000	365,400,000		
902	9			1	92,724,266	318,275,734	411,000,000	41,100,000	369,900,000		
1002	10			1	92,724,266	323,275,734	416,000,000	41,600,000	374,400,000		
1102	11			1	92,724,266	328,275,734	421,000,000	42,100,000	378,900,000		
1202	12			1	92,724,266	328,275,734	421,000,000	42,100,000	378,900,000		

82.1272	3호	203	2	1	91,900,841	324,099,159	416,000,000	41,600,000	374,400,000
		303	3	1	91,900,841	294,099,159	386,000,000	38,600,000	347,400,000
		403	4	1	91,900,841	298,099,159	390,000,000	39,000,000	351,000,000
		503	5	1	91,900,841	302,099,159	394,000,000	39,400,000	354,600,000
		603	6	1	91,900,841	306,099,159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703	7	1	91,900,841	310,099,159	402,000,000	40,200,000	361,800,000
		803	8	1	91,900,841	314,099,159	406,000,000	40,600,000	365,400,000
		903	9	1	91,900,841	319,099,159	411,000,000	41,100,000	369,900,000
		1003	10	1	91,900,841	324,099,159	416,000,000	41,600,000	374,400,000
		1103	11	1	91,900,841	329,099,159	421,000,000	42,100,000	378,900,000
		1203	12	1	91,900,841	329,099,159	421,000,000	42,100,000	378,900,000
82.1272C	4호	204	2	1	91,900,841	324,099,159	416,000,000	41,600,000	374,400,000
		304	3	1	91,900,841	297,099,159	389,000,000	38,900,000	350,100,000
		404	4	1	91,900,841	301,099,159	393,000,000	39,300,000	353,700,000
		504	5	1	91,900,841	305,099,159	397,000,000	39,700,000	357,300,000
		604	6	1	91,900,841	309,099,159	401,000,000	40,100,000	360,900,000
		704	7	1	91,900,841	313,099,159	405,000,000	40,500,000	364,500,000
		804	8	1	91,900,841	317,099,159	409,000,000	40,900,000	368,100,000
		904	9	1	91,900,841	322,099,159	414,000,000	41,400,000	372,600,000
		1004	10	1	91,900,841	327,099,159	419,000,000	41,900,000	377,100,000
		1104	11	1	91,900,841	332,099,159	424,000,000	42,400,000	381,600,000
		1204	12	1	91,900,841	332,099,159	424,000,000	42,400,000	381,600,000
82.8628B	5호	205	2	1	92,724,266	332,275,734	425,000,000	42,500,000	382,500,000
		305	3	1	92,724,266	299,275,734	392,000,000	39,200,000	352,800,000
		405	4	1	92,724,266	303,275,734	396,000,000	39,600,000	356,400,000
		505	5	1	92,724,266	307,275,734	400,000,000	40,000,000	360,000,000
		605	6	1	92,724,266	311,275,734	404,000,000	40,400,000	363,600,000
		705	7	1	92,724,266	315,275,734	408,000,000	40,800,000	367,200,000
		805	8	1	92,724,266	319,275,734	412,000,000	41,200,000	370,800,000
		905	9	1	92,724,266	324,275,734	417,000,000	41,700,000	375,300,000
		1005	10	1	92,724,266	329,275,734	422,000,000	42,200,000	379,800,000
		1105	11	1	92,724,266	334,275,734	427,000,000	42,700,000	384,300,000
		1205	12	1	92,724,266	334,275,734	427,000,000	42,700,000	384,300,000
83.4815A	6호	206	2	1	93,416,341	335,583,659	429,000,000	42,900,000	386,100,000
		306	3	1	93,416,341	300,583,659	394,000,000	39,400,000	354,600,000
		406	4	1	93,416,341	304,583,659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506	5	1	93,416,341	308,583,659	402,000,000	40,200,000	361,800,000
		606	6	1	93,416,341	312,583,659	406,000,000	40,600,000	365,400,000
		706	7	1	93,416,341	316,583,659	410,000,000	41,000,000	369,000,000
		806	8	1	93,416,341	320,583,659	414,000,000	41,400,000	372,600,000
		906	9	1	93,416,341	325,583,659	419,000,000	41,900,000	377,100,000
		1006	10	1	93,416,341	330,583,659	424,000,000	42,400,000	381,600,000
		1106	11	1	93,416,341	335,583,659	429,000,000	42,900,000	386,100,000
		1206	12	1	93,416,341	335,583,659	429,000,000	42,900,000	386,10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202호 주거전용면적은 84.3225m²으로 다른층 2호라인보다 1.4597m² 큼니다.

※ 202, 203, 204, 206호의 주거공용면적은 다른 층의 동일라인 주거공용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니다.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호실별 등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로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해당 공용면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 앞)전에 완납 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계약시에 체결한 잔금지정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기타 지역거주자로 청약신청가능 합니다.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바랍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 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 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가능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당첨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민영주택	1)해당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 2)기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거주자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p>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혹은 유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수 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시 추가 확인 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 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일반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 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 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가점제 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 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턴 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일자	신청 방법	신청장소
일반 공급	1순위	2021.09.27.(월) 08:00~17:3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순위	2021.09.28.(화) 08:00~17:3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등)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준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 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려가 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 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가 불가 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구비사항이 안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I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계약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반공급	1,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 10. 5. (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 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 10. 07.(목)~2021. 10. 08.(금) 10:00~17:30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장소:제주시 외도일동 48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 10. 18.(월)~2021. 10. 20.(수) 10:00~17:30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장소:제주시 외도일동 485-3)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 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10. 05.(화)~2021. 10. 14.(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 사항 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10. 0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당첨자 서류접수시 구비서류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일자에 주민 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 공통 사전제출서류(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사업주체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 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	

■ 일반공급(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추가해당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 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 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 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무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2.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 서류 일체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한자는 제외)
		○	추가 개별 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공급계약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 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 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공급계약 기간 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 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

사용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 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 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수 분양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 의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홈페이지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자는 이에 수의,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 고
계약금 및 잔금	수협	0010-2691-5073	유립하우징(주)	입금시 입금자명동호수+계약자성명 예) 505호 홍길동, 505홍길동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지정된 잔금납부일에 계약서에 기재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 및 무통장 입금가능. 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불가)
- ※ 상기 입금계좌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1006호 홍길동 → 1006홍길동)
-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부적격대상자통보일로 부터 7일) 이후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V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

- 본 아파트는 2021년 8월 31일 사용승인 득한 건축물로 기본마감재(문틀,문짝,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뿐만 아니라,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시스템어컨/김치냉장고/냉장고/전기광파오븐/3구인덕선/2구하이라이트/드레스룸시스템선반/안방불박이장/작은방불박이장2/휴젠뜨2/칫솔살균기2)이 시공 및 설치되어 제공하므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제공되는 제품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 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대 동일하게 방, 알파룸은 강마루로 시공되며, 거실, 주방은 대리석으로 시공됩니다.
- A 타입 대피공간은 창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VI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조

- 본 아파트는 2021년 8월 31일 사용승인 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분양아파트로 입주자 사전점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10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 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보증 : 본 아파트는 2021년 8월 31일 사용승인 되어 즉시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500세대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6m, 2.5m 총87대(상가 주차대수 포함)

- 지하1층 자주식 주차 52대 (일반30, 확장형12, 경형8, 장애인2):전기차5대포함.
- 지상1층 자주식 주차 35대 (일반13, 확장형20, 장애인2)

VI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 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 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 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수인-동의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하기로 합니다.(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시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 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

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동별층별 등 공급가격의 상이함을 인지하시고 수인·동의하기로 하며 이에대해 확인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 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 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관련 유의사항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m²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및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지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 동급, 동가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3D,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제공되는 제품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본 주택에 제공되는 제품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 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여 법적 기준에 위배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보관소,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가스정압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및 수인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입면 및 저층부 외벽마감, 등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 주체 변경 시 입주자(계약자 등 포함)는 이를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 내·외부 조명 및 사인,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사용 및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12층 이하의 단지로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상 및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및 수인합니다.

VI 기타사항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 감리	통신/소방 감리
회사명	(주)이가건축사사무소	신아이엔씨(주)	신아이엔씨(주)
감리금액	₩120,000,000	₩9,200,000	₩25,8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사)	유림하우징(주)	220111 - 0092048
시공사	대림종합건설(주)	220111 - 0125443

■ 견본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85-3

■ 블로그주소: <https://blog.naver.com/fejubuildingsale>

■ 분양문의 : 9911-317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